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2047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204785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가단10907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박정혁, 전수려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변론종결 2023. 3. 16.

판결선고 2023. 4. 6.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가단10907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B과 피고 사이에 2020. 7. 24.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별지2 채권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2020. 8. 20.에 원고와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보내준 보험설계제안서 상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 평가를 신뢰하여 C과 계속 거래한 것이고, C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가 선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매출채권보험계약 체결일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점, 위 매출채권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는 L연합회와 M기관에 등록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신용도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는 C과 지속적인 거래를 해오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매출채권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정 및 기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귀옥, 판사 이민영, 판사 옥제영

별지